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최유희 의원입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발생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,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3. 3. 1.부터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 환경교육 관련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본 조례는 환경교육법의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,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설치 목적과

달리 ‘농촌 유학’ 단일 사업에만 사용되는 등 기금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, 유사·중복 위원회의 운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생태전환교육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, 유사·중복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폐지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